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6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박성훈 · 김기웅 · 안철수
박충권 · 김승수 · 이현승
김형동 · 김성원 · 한지아
고동진 · 이상휘 · 안상훈
강명구 · 서명옥 · 박수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① 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④ 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①</u> <u>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u> <u>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u> <u>로 선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u> <u>「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u> <u>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u> <u>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u> <u>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u> <u>으로 한정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u> <u>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u> <u>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u> <u>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u> <u>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u> <u>그 범위에 한한다.</u> <u>④ 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u> <u>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u> <u>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u> <u>한다.</u>